

세무와회계저널
제16권 제5호 2015년 10월 pp.111~139
한국세무학회

중국의 집합투자기구 과세제도에 관한 연구*

유호림**

<요 약>

본문에서는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일반적 과세방법과 과세제도에 관한 이론적 검토에 기초하여 중국의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과세규정과 OECD모델조약 및 한중조세조약의 관련 규정을 중심으로 중국의 집합투자기구 관련 과세제도의 특징과 우리나라의 관련 세법규정 등을 분석하고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한중조세조약의 적용가능성 및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살펴보았으며 그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에서는 중국 국내에서 결성된 집합투자기관과 집합투자기구에 귀속되는 소득 및 기업투자자가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분여받는 소득에 대하여는 모두 기업소득세의 징수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주식양도소득을 제외한 배당소득과 이자소득 등의 자본이득이 개인에게 귀속되는 경우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국의 세법에서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신탁도관이론과 대리방법에 근거하여 과세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을 채용하고 있는데서 기인한 결과로 판단된다. 둘째, 현행 양국의 세법규정과 한중조세조약의 규정을 고려하면 QFII펀드 등 우리나라의 집합투자기구가 양국의 세법상 ‘거주자’나 ‘수익적 소유자’ 및 조세조약의 적용대상인 ‘인’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현행 한중조세조약의 규정으로는 양국간 이중과세문제를 해소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한중조세조약의 개정 또는 의정서의 체결 등을 통하여 집합투자기구와 이와 관련있는 한중조세조약상의 ‘인’과 ‘거주자’ 및 ‘수익적 소유자’에 관한 규정 등을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 셋째,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공모형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규정을 추가해야 한다. 동 규정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집합투자기구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포함되지 아니하나, 국제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가 피투자국에서 취득하는 소득에 대하여 그 원천지국에서 과세되는 경우에는 조세조약을 적용할 수 없게 되므로 국내에서 결성된 공모형 집합투자기구에 한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간주하는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넷째, 현재 OECD모델조약 및 주요국의 세법에서는 공모투자펀드 등 집합투자기구가 사법체계에서 실제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익적 소유자’로 보아 조세조약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세법에서는 ‘수익적 소유자’에 관한 명문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조세조약을 적용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최근 몇몇 판례에서 ‘수익적 소유자’의 개념을 제시하고 있으나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담보

* 본 논문은 2014학년도 강남대학교 학술연구비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

본 논문의 개선 및 보완을 위해 도와주신 익명의 심사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강남대학교 세무학과 부교수, tigerwoods@kangnam.ac.kr

하기 위하여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4항 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에 ‘수익적 소유자’에 관한 규정을 신설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법인세법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에 대하여 법인세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집합투자기구는 법인세법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국내에서 결성된 공모형 집합투자기구에 한하여 법인세법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고 이를 위하여 집합투자기구의 수익과 비용 및 손실에 관한 내용을 특례규정으로 입법할 필요가 있다. 또한, 법인세법 제57조의2 제3항의 규정에 따르면 집합투자기구는 ‘조세목적상의 인’으로 취급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으나,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제5조 제1항과 해석상 모순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술한 것처럼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제5조 제1항을 또는 법인세법 제57조의2 제3항의 규정이 상호간 정합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개정해야 할 것이다.

〈주제어〉 집합투자기구, 한중조세조약, 수익적 소유자, 신탁과세이론

I. 서 론

일반적으로 집합투자기구는 ‘2인 이상에게 투자권유를 하여 모은 금전 등을 투자자로부터 일정한 운용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취득·처분 등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것’으로 정의된다. 우리나라의 집합투자기구 관련 법률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서는 집합투자기구를 ‘집합투자를 수행하기 위한 기구로서 집합투자업자인 위탁자가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재산을 신탁업자로 하여금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투자·운용하게 하는 신탁 형태의 집합투자기구’로 규정하고 있다.¹⁾

한편, 세무상으로는 우리나라의 세법에서 집합투자기구에 관하여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해석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 몇몇 학자들은 집합투자기구를 ‘다수의 투자자로 구성되고 다양한 증권에 분산투자하며 설립지 국가의 법률에 의하여 투자자가 보호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정의하고 있다.²⁾ OECD에서는 2010년 4월 23일에 발표된 “집합투자기구의 소득에 대한 조세조약 혜택허용”이라는 보고서를 통하여 집합투자기구를 ‘다수에 의하여 소유되고 위험분산형 간접소유로 증권을 보유하며 설립국에서 투자자보호 조항의 적용을 받는 펀드’로 정의하고 있다(국제조세협회 2014. 211—212).³⁾

- 1) 우리나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에서는 “집합투자기구”를 ‘집합투자를 수행하기 위한 기구’로 정의하고 있다.
- 2) 금융감독원 금융용어사전(<http://www.fss.or.kr/fss/kr/info/financial/financedic.jsp>)과 문성훈(2008), 김용민(2010), 이경근(2011), 손영철·김선중(2009) 등을 참고하였다.
- 3) 특히, 자산운용회사들이 집합투자기구의 지분보유자들을 대신하여 자산을 관리하는 재량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세법상 ‘인’에 해당하고 설립국의 법률에 따라 ‘거주자’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에는 조세조약

따라서, 자본시장법에서 집합투자기구의 유형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열거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을 뿐 세무상으로도 집합투자기구를 ‘다수의 투자자들에 의해 집합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투자기구’로 새기고 있다는 점에서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정의에 있어서는 자본시장법의 규정이나 세무상의 개념이나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집합투자기구는 일반적으로 계약형·신탁형·회사형·조합형으로 구분된다. 먼저, 계약형은 대개 계약법에 따라 결성된 펀드로서 법률상 실체로 인정되지 아니하며, 출자지분을 가진 투자자들의 공동소유권을 가진 기구로서 일종의 조합계약의 형태를 보인다. 신탁형은 신탁법에 따라 결성된 펀드로서 위탁자가 펀드재산을 수탁자로 하여금 위탁자의 지시에 따라 투자·운용하고 수탁자는 펀드재산을 보관·관리하며 위탁자의 운용을 감시할 책임을 갖는다. 회사형은 말 그대로 회사의 형태로 조직되기 때문에 법률상 실체로 간주되기 때문에 주식을 발행할 수 있으며 투자자는 투자자로서의 지위와 주주로서의 지위를 동시에 갖게 된다. 마지막으로 조합형은 우리나라의 자본시장법에서 집합투자기구로 분류되고 있는 투자조합과 투자익명조합을 가리키는바, 투자조합은 민법에 따른 조합형태의 집합투자기구를 의미하며 투자익명조합은 상법의 규정에 따른 익명조합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다.⁴⁾

그런데, 집합투자기구는 투자를 통해 수익을 달성하기 위해 다수의 투자자로 조직된 일종의 자금의 집합체이기 때문에 형식상 수익을 취득하는 자와 실제로 수익을 취득하는 자가 달라지게 되어 투자단계와 투자소득의 분배단계에서 각각 과세되는 중복과세문제가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나아가 세계 각국의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집합투자기구의 개념과 유형 및 그에 대한 과세방법도 상이하기 때문에 종종 국제간 이중과세 또는 이중비과세를 야기하는 등 집합투자기구를 통해 취득한 소득에 대한 과세에 있어서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⁵⁾

상 ‘수익적 소유자’로 간주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는바, 진술한 위탁관리, 세무상 ‘인’, ‘거주자’ 등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는 조세조약을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이해된다.

- 4) 문성훈(2008), 김용민(2010)을 참조하였다. 계약형의 경우 아일랜드와 네덜란드를 제외한 대부분의 유럽 국가와 미국과 캐나다 등에서 주로 이용되고 있으며, 영국·일본·호주·뉴질랜드 등의 국가에서는 신탁형이 집합투자기구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 다만, 회사형은 영국과 일본에서 일부 집합투자기구의 한 형태로 활용되고 있으나 그 비중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 5) 구체적으로는 계약형과 신탁형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법률상 그 실체가 인정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집합투자기구를 단지 소득을 수취하기 위한 형식적인 도관으로 간주하여 그 실질 수익자를 찾아 과세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나, 회사형의 경우 회사의 형태로 조직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형 및 신탁형 집합투자기구와는 달리 집합투자기구 자체를 납세의무자로 볼 수 있게 되므로 계약형과 신탁형 양자간 조세중립성이 훼손된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또한, 역외펀드 또는 국제펀드의 경우 동일한 신탁형 집합투자기구 또는 회사형 집합투자기구라고 할지라도 각국에서 채용하고 있는 과세방법이 동일하지 아니하거나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세무상 취급방법이 상이한 경우에는 투자국과 피투자국간 국제적 이중과세 또는 이중비과세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한편, 중국에서는 집합투자기구를 ‘불특정 대중을 대상으로 펀드를 판매하는 방식을 통하여 대규모의 자금을 조달한 후, 펀드의 관리인에 위탁관리하고 펀드관리자가 당해 자금을 운용하여 펀드의 소유자에게 이익을 배분하는 집합투자방식’으로 정의하고 있다.⁶⁾ 문헌상으로 볼 때 중국의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전적 정의는 우리나라에서 정의하고 있는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정의와 크게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중국은 우리나라와는 달리 집합투자에 관한 법률인 「證券投資基金法」에서는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정의를 규정하지 아니하고, 관련 법률인 「信託法」과 「證券法」 및 「證券投資基金法」에서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내용을 각각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그것과 다소 상이할 뿐이다(中國信託法 §2-§4, 中國證券法 §2, 中國證券投資基金法 §2).⁷⁾

중국의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정의와 관련하여 특히 주목할 점은 중국의 집합투자기구는 반드시 신탁을 통하여 결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우리나라의 자본시장법에서는 적격 집합투자기구로 투자신탁과 투자회사 및 각종 사모투자회사와 투자조합 등을 열거하고 있으므로 계약형을 제외한 신탁형과 회사형 및 조합형을 모두 적격 집합투자기구로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되나(우리나라 자본시장법 제9조),⁸⁾ 중국의 「信託法」과 「證券法」 및 「證券投資基金法」등 관련 법률에서는 집합투자기구의 유형에 대하여 별도로 열거하고 있지 않지만 「信託法」과 「證券法」 및 「證券投資基金法」의 관련 규정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중국의 집합투자기구는 오로지 신탁을 통하여만 설립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된다(中國信託法 §2-§4, 中國證券法 §2, 中國證券投資基金法 §3-§7).

이러한 한중 양국의 집합투자기구 관련 규정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집합투자기구 중 회사형과 조합형 집합투자기구가 신탁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중국에서는 집합투자기구로 인정되지 아니할 가능성이 존재하나, 중국의 집합투자기구는 예외없이 신탁형에 속하게 되므로 우리나라에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모두 집합투자기구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한중 양국의 법률관계를 현행 규정대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집합투자기구가 중국 국내에서 소득을 취득하는 때에 세무상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중국의 국내에서 결성된 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는 그가 취득하는 소득의 유형을 불문하고 모두 소득을 취득하기 위한 도관으로 취급하여 당해 집합투자기구를 통해 실질적으로

6) Baidu 백과사전(http://baike.baidu.com/link?url=1_WVcAhDxc0Nu6Kk9XshtntQoCXGhyKlmujK3zxy5yswoHy8Tct_0BCXVoOswdnG2TDvWmpqGLLOcr34jeq1uCGATNqKhbRmw5hiSb_Yh7)을 참고하였다.

7) 이처럼 중국의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규정이 中國信託法과 中國證券法 및 中國證券投資基金法에 분산되어 있는 것은 중국에서는 금융시장과 자본시장에 대한 관리가 우리나라처럼 금융감독위원회로 일원화되어 있지 아니하고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증권감독관리위원회·보험업감독관리위원회로 분리되어 있으며(업종별 분류관리) 그에 관한 법률 또한 각각 별도로 제정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8) 우리나라에서는 “집합투자기구”의 범위로 투자신탁 및 상법의 규정에 따른 투자회사·투자유한회사·투자합자회사·투자유한책임회사·투자합자조합·투자익명조합·사모투자전문회사 등으로 규정한다.

소득을 취득하는 기업 또는 개인 등 경제적 실체에 대하여 기업소득세 또는 개인소득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企所法 §1①, 企所條例 §3①, 財稅[2012]85號), 우리나라 등 국외에서 결성된 집합투자기구(QFII펀드 또는 RQFII펀드를 의미)가 중국 국경 내에서 취득한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명확한 규정이나 해석을 두지 아니하고 단지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심지어 중국의 과세당국은 우리나라 등 세계 각국과 체결한 조세조약의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2009년 11월 17일 이전에 국외에서 결성된 집합투자기가 취득한 주식 등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소급하여 과세하도록 규정하여 국제간 이중과세문제를 야기하고 있다(中國證券投資基金法 §8).⁹⁾

이는 주로 중국 과세당국의 국고주의적 과세관행 및 우리나라 등 집합투자기구가 설정된 국가와 중국이 집합투자기구 관련 법률체계가 상이하기 때문에 야기된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좀더 근본적으로 문제에 접근하면 우리나라의 경우 중국과 우리나라가 체결한 한중조세조약의 규정 및 양국의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과세체계의 불비에서 기인한 바가 더욱 크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집합투자기구의 과세문제에 관한 이론적 분석과 현행 중국의 집합투자기구 관련 과세 규정 및 OECD모델조약과 한중조세조약의 규정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현행 중국의 집합투자기구 과세제도 및 한중조세조약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총 5개 장으로 구성되었다. 제 I 장은 서론으로서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정의와 한중 양국의 관련 규정 및 과세문제에 대하여 서술하였으며, 제 II 장에서는 집합투자기구의 과세에 관한 일반적 과세방법과 신탁과세이론 및 수익적 소유자 과세이론을 중심으로 집합투자기구의 세무상 성격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제 III 장과 제 IV 장에서는 제 II 장에서의 이론적 검토와 OECD 모델조약의 관련 규정 및 해석을 바탕으로 현행 중국의 집합투자기구 관련 과세규정과 한중조세조약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을 분석하였으며, 제 V 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고 한중 양국의 집합투자관련 과세제도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9) 구체적으로 “집합투자기구의 투자 관련 조세는 당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가 부담하는바, 집합투자기구의 관리자 또는 기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국가의 세수징수 관련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현행 기업소득세법 또는 개인소득세법에서 국외에서 결성된 집합투자기구의 납세의무에 관하여 명확한 규정을 두고있지 아니하고, 단지 국외에서 결성된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세무행정해석인 國稅函[2009]47號와 財稅[2014]79號에서 집합투자기구의 일종인 QFII펀드와 RQFII펀드에 관한 과세규정을 두고 있을 뿐이다.

II.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일반적 과세방법 및 과세이론 검토

1.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문제와 일반적 과세방법에 대한 검토

가. 집합투자기구의 투자흐름과 관련 소득에 대한 과세문제

집합투자기구는 투자를 목적으로 형성된 자금의 집합체로서 대개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그 실체를 갖추게 된다. 이처럼 자금의 집합체라는 비법인실체로 형성된 집합투자기구는 다시 자산운용사 등 집합투자업자를 통해 투자대상자산으로 투자를 진행하여 소득을 취득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집합투자기구에 1차적으로 당해 투자소득을 취득하였다가 2차적으로 자산운용사 등 집합투자업자에게 귀속되었다가 최종적으로 최초의 투자자인 집합투자기구에 투자금을 출자한 투자자에게 분배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따라서, 만일 집합투자기구가 어떠한 한 국가에서 결성되어 그 국가 내부에서만 투자가 이루어지는 경우의 과세문제는 첫째,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단계에서는 배당소득과 이자소득 또는 양도소득에 관한 과세문제, 둘째, 1차적으로 집합투자기구에 당해 소득이 귀속되는 단계에서의 과세문제, 셋째, 2차적으로 집합투자기구에 귀속된 소득이 집합투자업자에게 귀속되는 단계에서의 과세문제, 넷째, 집합투자업자가 최초의 투자자에게 소득을 분배하는 단계에서의 과세문제 등 4가지로 요약될 것이다.

그러나, 만일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QFII펀드(또는 RQFII펀드) 등 역외펀드 또는 국제펀드(이하, ‘국제펀드’)처럼 국내에서 결성되어 국외에서 투자가 이루어지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양국간 국제적 이중과세문제의 조정단계를 거쳐야 하므로 그에 대한 과세문제는 좀더 복잡한 양상을 보이게 된다. 즉, 국제펀드의 경우 투자대상국에서의 과세문제와 집합투자기구의 설정국에서의 과세문제가 추가될 수 있으므로 각 소득의 흐름에 따른 국제펀드에 대한 과세문제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 투자대상국에서의 배당소득과 이자소득 또는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문제, 둘째, 1차적으로 투자대상국에서 집합투자기구에 당해 소득이 귀속되는 단계에서의 과세문제, 셋째, 2차적으로 집합투자기구에 귀속된 소득이 투자대상국에 소재하는 집합투자업자에게 귀속되는 단계에서의 과세문제, 넷째, 3차적으로 투자대상국에 소재하는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기구의 설정국가에 소재하는 집합투자업자에게 소득을 이전하는 단계에서의 과세문제, 다섯째, 집합투자기구의 설정국가에 소재하는 집합투자업자가 당해 소득을 보유하는 단계에서의 과세문제, 여섯째, 집합투자기구의 설정국가에 소재하는 집합투자업자가 최초의 투자자 즉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에게 소득을 분배하는 단계에서의 과세문제 등 총 6가지 과세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나.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일반적 과세방법

상술한 것처럼 국제펀드와 같은 집합투자기구를 이용하여 투자하는 경우에 과세문제가 복잡해지게 되는 이유는 첫째, 집합투자기구의 설정국과 투자국의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세무상 취급 방법이 상이하거나, 둘째, 집합투자기구의 설정국과 투자국 간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한 조세조약이 존재하는지 여부, 셋째, 집합투자기구의 설정국에서 이중과세조정 및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가능여부 등에 대한 검토에 따라 당해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문제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집합투자기구의 과세문제에 관한 선행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설정국과 투자대상국간에 발생하는 법률적 이중과세문제와 집합투자기구의 소재국에서 발생가능한 경제적 이중과세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세계 각국에서는 보편적으로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면제방법 · 자동이체방법 · 변형된 과세실체방법 · 대리방법 · 배당세액공제방법 등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보편적인 과세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¹⁰⁾

(1)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면제(tax exemption for investment fund method)

이는 투자를 목적으로 형성된 집합투자기구에 소득이 귀속되는 단계에서는 과세를 면제하지만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가 당해 집합투자기구(또는 집합투자업자)로부터 소득을 분배받는 단계에서는 과세하는 방법을 가리킨다. 이러한 방법에 따르면 집합투자기구가 국내에서만 소득을 취득하는 경우 발생하게 되는 경제적 이중과세문제는 완전히 해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국제펀드 등의 형태로 집합투자기구를 결성하여 소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기구의 소재국에서만 과세권을 행사하게 되고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국에서는 과세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과세면제방법을 이용하여 과세하는 경우 자본수출국인 집합투자기구의 설정국에는 다소 유리하나, 집합투자기구를 통해 투자가 이루어지는 자본수입국의 경우 과세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므로 조세수입이 감소하는 등 과세상 불리해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2) 자동이체방법(pass-through method)

이른바 자동이체방법은 집합투자기구를 하나의 도관으로 간주하여 집합투자기구의 모든 소득에 대하여 당해 소득의 발생시점에서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에게만 과세하고 집합투자기구 자체는 납세의무자로 취급하지 않는 과세방법이다. 이 방법은 결국 집합투자기구는 단순한 자금의 집합체에 불과한 완전한 도관체이므로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소득을 수취하는

10) 이하에서 서술하는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일반적인 과세방법에 대한 분류 및 세부적인 내용은 이경근(2004)의 내용을 참고하여 정리하였다. 다만, 국제조세에 관한 내용은 저자의 논점에서 추가하였음을 밝혀둔다.

자에게만 과세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자동이체방법은 도관이론에 매우 충실한 과세방법으로서 집합투자기구가 소득을 수취하는 단계에서 당해 소득이 실제로 투자자에게 분배되었는지 여부에 불문하고 집합투자기구가 수취한 소득이 각각의 투자자에게 직접 분배된 것으로 보아 과세하게 된다.

따라서, 투자자가 다수인 경우 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협력비용이 증가된다는 문제가 있으나, 집합투자기구의 기본원리와 실질과세원칙에 부합하며 국제간 이중과세가 완전히 제거된다는 장점이 있다.

(3) 변형된 과세실체방법(modified entity method)

이는 집합투자기구를 일종의 과세실체로 간주하여 과세하는 방법으로 신탁과세이론 중 실체이론이 집합투자기구의 과세방법에 적용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방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기구에 소득이 귀속되는 때에 법인세 등을 과세한 후 세후의 이윤을 투자자에게 분배하는 단계에서 다시 법인세(또는 소득세)를 과세하게 되므로 집합투자기구단계와 투자자단계에서의 경제적 이중과세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변형된 과세실체방법에서는 일반적으로 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는 법인세 등을 과세하되 투자자에게 소득을 분배하는 때에 세후의 잔여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하는 방법을 통해 이중과세문제를 제거하는 단계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다만, 국제펀드형태의 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이 방법을 적용하는 경우로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각국의 세무상 취급방법이 상이한 때에는 상술한 경제적 이중과세문제는 해소할 수 있으나 국제간에 발생하는 법률적 이중과세문제를 조정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다는 점이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4) 대리방법(surrogate method)

집합투자기구가 취득하는 소득에 대하여 대리방법을 적용하면 집합투자기구에 소득이 발생하는 시점에서는 집합투자기구에 과세하지만 투자자에게 소득이 분배되는 단계에서는 과세하지 아니하게 된다. 즉, 대리방법하에서는 집합투자기구가 투자자의 납세의무를 대리하여 세액을 납부하는 형태를 띠게 되므로, 사실상 집합투자기구가 투자자의 세액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원천징수의무자로 기능하게 된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공모펀드의 형태로 설정된 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대리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과세상 편리하다고 할 수 있으나, 국제펀드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이 방법을 적용하는 때에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각국간 세무상 취급이 상이한 경우에는 국제간 이중과세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투자자가 보유하던 집합투자기구의 지분 또는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투자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여지도 있다.

(5) 배당세액공제방법(imputation method)

일반적으로 배당세액공제방법은 법인세가 과세되는 경우에 동일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단계에서 과세된 후 다시 주주에게 세후소득이 귀속되는 단계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이중과세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다. 집합투자기구가 기본적으로 투자자들이 투자한 자금의 집합체라는 점을 고려하면 법인과 주주를 각각 집합투자기구와 투자자로 의제하여 배당소득세액공제방법을 적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즉, 배당세액공제방법하에서는 집합투자기구와 투자자 모두에게 법인세 등이 과세되지만 집합투자기구의 소득이 투자자에게 분배되는 때에 법인의 소득이 주주에게 귀속되는 때에 imputation 방법을 적용하여 이중과세를 제거하듯이 집합투자기구와 투자자간에도 동일한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국제펀드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에 이 방법을 적용하는 경우 당해 집합투자기구가 조세조약상 외국납부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이 되는 ‘인’의 범위에 포함되는지의 여부가 관건이 될 것이다.

2. 집합투자기구 관련 과세이론

가. 신탁도관이론

일반적으로 도관이론이란 사업체소득에 대하여 사업체는 단지 소득을 취득하기 위한 경로로만 이용되기 때문에 사업체 그 자체에 과세하지 아니하고 당해 사업을 통해 실질적으로 소득을 향유하는 사업체의 소유자에게 과세해야 한다는 이론이다(김병일 2005). 따라서, 소득을 취득하기 위한 도관에 불과한 사업체는 주주 등과 독립하여 조세를 부담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도관이론은 주로 법인의 원천소득에 대하여 당해 소득을 취득하는 법인단계와 세후이윤이 주주에게 귀속되는 때에 발생하는 이중과세문제를 제거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된다(김종해 2010).

신탁도관이론은 도관이론을 신탁과세에 적용한 것으로 신탁재산을 독립적인 실체로 인정하지 않고 단순히 수익자에게 신탁수익을 분배하기 위한 수단 또는 도관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신탁소득을 분배하기 전의 운용과정에서 발생된 소득의 내용에 따라 세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논리이다(이미현 2003). 이에 따르면 신탁은 당연히 과세실체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신탁이익에 대한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며, 당해 신탁수익을 분배받은 자만이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법인세법에서 신탁의 이익을 받을 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우리나라 법인세법은 신탁도관이론을 긍정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법인세법 제5조 제1항).

주지하다시피 집합투자기구는 투자자들이 투자한 자금의 집합체로서 실제로 당해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하는 수탁기관이 별도로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수탁기관이 집합투자자산을 운용하

여 발생한 소득이 1차적으로는 집합투자기구에 귀속되나 최종적으로는 투자자에게 귀속되는 투자방식이므로 신탁도관이론의 논리가 집합투자기구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논지에 따르면 수탁기관의 집합투자자산 운용의 결과로 발생한 소득이 형식적으로는 집합투자기구에 귀속되지만 그 실질 귀속자는 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들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전술한 일반적인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방법 중 집합투자기구의 납세의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투자자의 납세의무만을 인정하는 과세면제방법과 자동이체방법이 신탁도관 이론이라는 법리에 기초한 과세방법이라 할 수 있다.

즉, 신탁도관이론에 따르면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는 집합투자자산의 운용내용과 소득의 발생원천에 따라 구분하여 집합투자기구단계에서는 과세하지 아니하고 집합투자기구의 수익자(즉,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에게 과세하되 집합투자자산의 운용자가 소득을 집합투자기구의 수익자에게 지급하는 단계에서 관련 세액을 원천징수하고 과세종결하는 것으로 이해된다(김재진 · 홍용식 1998, 유호림 2012).

나. 신탁실체이론

세법에서 신탁을 관찰하는 또 다른 방법인 실체이론은 납세의무자인 개인 또는 법인을 각각 독립된 실체로 보아 과세해야 한다는 견해로서 신탁이익의 과세에 대하여 법률적 형식보다 경제적 실질을 중시하는 입장을 취한다. 즉, 신탁을 통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때에 세법을 적용하기 위하여는 신탁재산과 신탁회사 및 신탁자를 각각 독립된 과세실체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신탁수익이 귀속되는 각 단계마다 과세실체로 보아 세법을 적용하게 되므로 신탁수익이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단계와 신탁회사에 귀속되는 단계 및 신탁자에게 귀속되는 단계에서 각각 납세의무의 성립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신탁실체이론을 적용하면 집합투자기구인 신탁재산 또한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세실체로 취급해야 한다(유호림 2012). 그런데, 이처럼 신탁재산을 과세실체로 보는 경우에는 신탁도관이론에 비해 더욱 복잡한 과세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기본적으로 신탁재산인 집합투자기구는 자연인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집합투자기구에 소득세법을 적용할 수는 없을 것이지만, 집합투자기구의 성격이 신탁자들이 투자한 자금의 집합체에 속하기 때문에 이를 법인 또는 법인격 있는 단체로 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는 발생할 수 있다. 만일, 신탁재산으로 구성된 집합투자기구를 법인 또는 법인격 있는 단체로 본다면 일차적으로 신탁수익이 집합투자기구에 귀속되는 때에 법인세가 과세될 것이고, 집합투자기구에 귀속된 신탁이익이 신탁회사에 귀속되는 때에 또 다시 법인세가 과세된 후 최종적으로 신탁수익이 신탁자에게 귀속되는 때에 신탁자의 인격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과세될 것이다.

이처럼 신탁재산을 과세실체로 보는 경우에는 집합투자기구로 이루어진 신탁재산으로부터 신탁의 최종 수익자에게 수익이 이전되는 각 단계마다 과세가 이루어지므로 동일한 신탁수익에

대하여 이중과세 또는 삼중과세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또한, 신탁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에 귀속된 신탁수익이 주주에게 배당되는 때에 또다시 개인소득세 등으로 과세되므로 실체이론을 수용하는 경우 매우 복잡한 과세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유호림 2012). 그런데, 우리나라 법인세법에서는 집합투자기구가 취득한 수익에 대하여 그 투자신탁(투자신탁·투자합자조합·투자익명조합 등)을 내국법인으로 보아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인세법에서는 신탁실체이론도 일부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법인세법 제57조의2 제3항).

요컨대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방법 중 변형된 과세실체방법·대리방법·배당세액공제방법 등이 이와 같은 신탁실체이론에 기초한 과세방법인 것으로 판단된다. 즉, 신탁재산인 집합투자기구에 수익이 귀속되어 최종 수익자인 신탁자에게까지 수익이 흘러가는 모든 단계에서 과세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문제에 있어서 신탁실체이론을 수용하는 경우에는 투자자에게 수익을 분배하는 단계에서 세후의 잔여이익에 대하여만 과세하거나(변형된 과세실체방법) 또는 집합투자기구가 사실상 신탁수익자를 대리하여 세액을 원천징수하거나(대리방법), *imputation* 방법을 통하여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등(배당세액공제방법) 매우 복잡한 이중과세의 제거절차가 반드시 필요하게 된다.

3. 집합투자기구와 수익적 소유자

집합투자기구를 오로지 법적 형식에 근거하여 과세여부를 판단한다면 필연적으로 경제적 이중과세문제가 발생하게 될 뿐 아니라,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가 그 법적 형식을 남용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이익의 실질 귀속자와는 전혀 무관한 자에게 과세하거나 때로는 과세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세계 각국에서는 보편적으로 집합투자기구를 경제적 실질에 근거하여 판단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바, 집합투자기구는 단순한 소득을 취득하기 위한 도관으로만 판단하여 이를 통해 실질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는 자에게 과세하고 있다. 따라서,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여부를 결정하는 때에는 집합투자기구라는 자금의 집합체를 통해 수익을 취득하는 자(즉, 집합투자기구가 취득한 수익의 실질 귀속자)를 판단하는 것은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문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에 있어서 그 실질 귀속자를 판단하는 방법으로 내국세법에서는 ‘실질과세의 원칙’을 두고 있으며 OECD모델조약과 세계 각국간 조세조약에서는 ‘수익적 소유자 과세원칙’을 두고 있다. 실질과세의 원칙이란 어떠한 거래 등의 법적 형식과 경제적 실질이 부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반드시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과세해야 함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국세기본법에서 거래의 귀속에 관한 실질과세와 거래의 내용에 관한 실질과세 및 우회거래와 다단계 거래에 관한 실질과세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국세기본법 제14조). 따라서, 이와

같은 실질과세의 원칙을 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적용한다면 집합투자기구가 가진 기본적인 성격이 신탁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당해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투자자에게만 과세하는 것으로 과세종결될 것이며 이는 곧 우리나라의 법인세법 등에서 신탁의 수익자에게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에 대한 근거가 될 것이다.¹¹⁾

그런데, 현행 우리나라의 세법에서는 국제펀드에 있어서 그 실질 귀속자를 판단하는 기준인 ‘수익적 소유자’에 대하여는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주지하다시피 국제펀드는 한 국가의 과세권 범위 내에서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 나라 또는 여러 나라의 투자자가 공동으로 투자하여 한 나라에서 펀드를 설정한 후 다른 한 나라 또는 여러 나라에 투자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국제펀드가 소득을 취득하는 때에는 필연적으로 펀드설정국(자본수출국)과 펀드투자국(자본수입국)간의 이중과세 또는 이중비과세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그렇다면 조세조약에 관한 국제적인 규범인 OECD모델조약을 통하여 ‘수익적 소유자’에 대한 개념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지만, 현재까지 OECD모델조약에서는 그 유형과 판정방법 등에 대하여만 기술하고 있을 뿐 명확한 정의를 두고 있지는 않다. 즉, OECD에서는 1992년 OECD모델조약의 개정을 통하여 조세조약을 이용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투시접근법(Look Through Approach) · 이중조세해택제한법(Exclusion Approach) · 과세대상 접근법(Subject to Tax Approach) · 통로 접근법(Channel Approach) 등 4가지 접근법을 제시하였으며, 이러한 4가지 접근법은 한 가지 방법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4가지 방법을 사용하여 수익적 소유자 여부를 판정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을 뿐이다(송성권 2007).¹²⁾ 따라서, 집합투자기구인 국제펀드의 소득에 대한 실질 귀속자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수익적 소유자’에 대한 개념정립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우리나라의 수익적 소유자에 대한 선행 연구에 따르면, 조세조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익적

11) 법인세법 제5조 제1항에서는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수익자가 특정되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탁의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가 그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여 신탁도관이론을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2) 그리고 OECD에서는 이러한 접근방식을 채택할 때에 선의의 기업에게도 조약해택의 적용이 배제될 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항(Safe Harbor)을 규정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OECD모델 조세조약 주석 제19호에서는 그러한 유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① 법인의 사업목적, 활동 등의 건전한 사업상의 이유에서 행해졌으며, 조세협약상의 혜택을 보려는 것이 주된 목적이 아닌 경우
 ② 조세조약상의 혜택을 받고자 하는 소득이 해당 법인이 실질적인 사업활동과 관련이 있는 경우
 ③ 조세조약상 감면받는 세액이 당해 기업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국가에서 부과되는 세액보다 크지 않은 경우(즉, 이중비과세 또는 양 당사자국에서 총 납부세액의 절대적 경감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④ 동 기업이 거주지국의 주식시장에 상장된 회사이거나, 상장회사의 자회사인 경우(거주지국에 상장까지 되어 있다면 도관의 협의를 벗어나고 선의의 기업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
 ⑤ 해당 기업이 거주지국이 원천지국과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고, 그 조약상의 혜택이 전자의 조약에 비하여 불리하지 않는 경우(이 경우 해당 기업이 조세조약을 남용해야 할 동기가 없다)

소유자란 ‘수령한 경제적 이득의 법률적 귀속에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그것을 지배, 관리 또는 처분을 하고 그에 따른 부담을 지는 자’ 또는 ‘소득의 수취법인이 당해 국내원천 소득과 관련하여 법적 또는 경제적 위험을 부담하고 동 소득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등 동 소득에 대한 소유권을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로 ‘수익적 소유자’를 정의하기도 하며(오윤 2010)¹³⁾, 우리나라의 경우 실정세법에서 직접적으로 ‘수익적 소유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조세회피지역에 소재하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서 조세조약상의 비과세·면제 또는 제한세율의 적용을 위한 사전 승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취자의 하나로서 실질귀속자를 OECD 모델조세조약상 수익적소유자로 새겨야 한다’고 보는 주장도 있다(김완석 2007).

다만, 최근 OECD에서는 주식의 개정을 통하여 ‘신탁의 설립국 세법에 따라 신탁을 납세의무자로 보는 경우 신탁 또한 조약목적상의 인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지침을 내리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집합투자기구가 조세조약상의 ‘인’이 될 수 있는 범위에 대하여는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제시된 것으로 보인다(OECD 모델조약 주석 3-2). 그렇다면 OECD에서는 신탁을 실제로 보아 납세의무자로 해석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는데, 중요한 단서는 자국의 세법에서 신탁을 과세실체로 취급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이 될 것이다.

이러한 단서에서 추론해 보면 어느 한 국가에서는 신탁을 과세실체로 인정하고 다른 한 국가에서는 신탁을 도관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탁에 의해 설정된 국제투자펀드의 형태를 지닌 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는 조세조약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그러나, 이 또한 단지 신탁의 일종인 집합투자기구가 조세조약의 적용대상이 되는 ‘인’의 범위에 포함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 조세조약을 적용하기 위한 수익적 소유자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인지에 대하여 아직 명확한 언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국제펀드의 소득에 대한 과세에 있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III. 현행 중국의 집합투자기구 과세제도에 대한 검토

1. 중국 국내에서 결성된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

중국의 기업소득세법에서는 중국 국경 내에 소재하는 기업과 기타 소득을 취득하는 경제조직을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국 국경 내에 설립된 펀드회사 등 집합투자기관이 중국 국내에서 펀드를 결성하여 투자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당해 집합투자기관은 기업소득세의 납세

13) 다만, 이러한 수익적 소유자의 판단에 있어서 ① 국내세법상 소득을 대상으로 한 것이며, ② 소득을 직접 향유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향유하게 하는 권리를 가지는 한편, 그 향유에 따른 부담도 지는 자이어야 하며, ③ 그 판단에 있어서 정당한 사업목적에 따른 거래인지와 조약을 부당하게 남용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의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의무자가 된다(企所法 §1①, 企所條例 §3①).¹⁴⁾ 그런데, 중국의 기업소득세법에서는 ‘기타 소득을 취득하는 경제조직’ 또한 기업소득세의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집합투자기구가 전술한 ‘기타 소득을 취득하는 경제조직’에 포함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즉, 현행 중국의 기업소득세법을 엄격하게 해석하면 집합투자기관에서 결성한 집합투자기구를 통해 운용소득을 취득하는 경우 집합투자기구 자체가 당해 소득에 대한 기업소득세의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처럼 집합투자기구 자체를 납세의무자로 해석하는 경우에는 당해 집합투자기관이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하여 취득하는 소득은 1차적으로 집합투자기구에 귀속되므로 응당 당해 집합투자기구에 기업소득세를 과세해야 하기 때문에, 그 소득을 집합투자기관에서 2차적으로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개인투자자 또는 기업투자자)에게 분배하는 단계에서 또다시 개인소득세 또는 기업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제적 이중과세문제가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중국의 기업소득세법 및 관련 법규 등에서는 집합투자기구가 증권시장에서 운용수익(주식과 채권의 양도소득 및 배당소득과 이자소득 포함)을 취득하는 때에 당해 집합투자기구가 운용수익을 취득하는 경우와 집합투자기관이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주식과 채권의 양도소득 및 기업투자자가 집합투자기구로부터 취득하는 소득에 대하여도 기업소득세를 모두 면제하도록 규정하여 집합투자기구가 소득을 취득하고 분배하는 단계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이중과세문제를 해소하고 있다(財稅[2008]1號 §2).¹⁵⁾

그러나, 집합투자기구로부터 소득을 분배받는 개인투자자의 경우에는 집합투자기구의 주식보유기간에 따라 과세표준을 달리하여 20%의 세율로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¹⁶⁾ 집합투자기

14) 다만, 중국에서는 중국 국내의 펀드회사가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결성한 펀드의 운용보수만을 소득으로 수취할 뿐 운용수익은 펀드회사에 귀속되지 아니하므로, 중국의 펀드회사 등 집합투자기관은 그가 수취한 펀드의 운용보수에 대하여만 기업소득세의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企所法 §6②, 企所條例 §15, 財稅[2002]128號 §4).

15) 한편, 財稅[2002]128號와 財稅[2004]78號에서는 집합투자기관이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주식 또는 채권을 양도하고 취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기업소득세를 면제하나 그 보유단계에서 발생하는 배당 또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소득을 지급하는 기업 등으로 하여금 개인소득세(20%)를 원천징수하도록 하고 개인투자자 또는 기업투자자가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배당 또는 이자소득을 수취하는 단계에서는 개인소득세와 기업소득세를 모두 면제하도록 규정하였으나, 개인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면제 규정(財稅字[1998]61號)이 폐지되기 전까지는 펀드청약 및 콜프리미엄으로 인한 양도차익에 대한 개인소득세의 납세의무를 면제하되 기업소득세는 과세하도록 규정하는 등 다소 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었다. 이는 과거 중국의 과세당국이 집합투자기구를 과세상 “실체”로 볼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소득을 취득하기 위한 “도관(導管)”으로 볼 것인지에 대하여 명확한 지침을 확정하지 못하였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16) 상기 규정(財稅[2012]85號)에서는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상장주식과 비상장주식 포함)의 보유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을 감액계산한 후 20%의 세율로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단계에서 보유하고 있는 채권의 경우 그 이자소득에 대하여 당해 소득을 지급하는 기업 등으로 하여금 개인소득세(20%)를 원천징수하되, 개인투자자 또는 기업투자자가 집합투자기구로부터 이자소득을 수취하는 단계에서는 개인소득세와 기업소득세를 모두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財稅[2002]128號 §2-3).¹⁷⁾

요컨대, 과거 중국의 기업소득세법에서는 신탁실체이론과 변형된 과세실체방법에 근거하여 정책목적에 따라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여부를 결정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었기 때문에 집합투자기구와 투자자에 대한 경제적 이중과세문제가 상존하고 있었으나, 최근에는 신탁도관이론과 대리방법에 근거하여 집합투자기구로 하여금 소득의 실질취득자에 대하여 기업소득세 또는 개인소득세를 원천징수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경제적 이중과세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 QFII펀드 등 중국 국외에서 결성된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

중국 기업소득세법에서는 중국 국경 내에 소재하는 기업과 기타 소득을 취득하는 조직을 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기업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납세의무자는 등기지역과 실제 관리기구의 소재지에 따라 주민납세의무자와 비주민납세의무자로 구분된다(유호림 2011a. 343-344).¹⁸⁾ 주민납세의무자의 경우 중국 국경 내외의 모든 원천소득에 대하여 25%의 세율을 적

①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 배당소득금액의 25%

② 보유기간 1개월 초과 1년 미만인 경우 : 배당소득금액의 50%

③ 보유기간 1개월 미만인 경우 : 배당소득금액 총액

다만, 보유기간이 1년을 초과한 주식에 대하여 배당소득금액을 25%로 감액하여 배당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동 주식을 처분하여 발생한 주식양도차익이 기납배당소득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증권회사 등 주식의 관리기관은 당해 주식양도차익을 취득하는 개인의 증권계좌에서 그 차액을 징수하여 증권등기결산공사에 납부하여야 하며, 증권등기결산공사는 다시 동 징수금액을 상장회사에 교부하여 관할세무기관에 신고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관련 규정(財稅[2014]48號)에 근거하여 동일하게 처리하고 있다).

17) 다만, 중국에서는 개인의 채권투자가 제한되어 있어 채권의 양도차익에 대한 개인소득세 규정은 존재하지 아니하며, 2013년부터는 財稅[2013]5號의 규정에 근거하여 개인투자자 또는 기업투자자가 지방정부채권을 보유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개인소득세와 기업소득세를 모두 면제하고 있다.

18) 주민납세의무자는 중국의 법률에 따라 중국 국경 내에 설립되었거나 또는 외국법률에 의거하여 중국 국경 외에 설립되었으나 실제관리기구가 중국 국경 내에 소재하는 기업을 의미하며(企所法 §2②, 企所條例 §3①), 비주민납세의무자는 외국의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되고 그 실제관리기구가 중국 국경 내에 소재하지는 아니하나 중국 국경 내에 기구 또는 장소를 설치한 경우 및 중국 국경 내에 기구 또는 장소를 설치하지 아니하였으나 중국 국경 내에서 원천소득을 취득하는 외국기업과 기타의 경제조직을 가리킨다(企所法 §2③, 企所條例 §5). 한편, 실제관리기구란 기업의 생산경영상황 및 임직원과 자산상황 등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전면적인 통제 및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구를 의미하는바, 이는 OECD모델조세

용하여 납부할 세액을 계산하며 비주민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중국 국경 내의 원천소득에 대하여만 10%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납부할 세액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企所法 §3②, 企所法 §4, 企所條例 §91①).¹⁹⁾ 이처럼 중국에서는 어떠한 과세실체가 주민납세의무자인지 또는 비주민납세의무자인지 그리고 비주민납세의무자일지라도 중국 국경 내의 기구 또는 장소와 당해 비주민납세의무자가 취득한 원천소득이 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과세범위와 적용세율이 달라지게 된다(한상국 2007).

따라서, 전술한 것처럼 만일 중국의 과세당국이 QFII펀드 등 중국 국외에서 결성된 집합투자기구를 중국 기업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경우에는 당해 집합투자기구가 주민납세의무자에 해당하게 될 것인지 또는 비주민납세의무자에 해당하게 될 것인지 불분명하다.²⁰⁾ 또한, 중국의 기업소득세법에 따르면 QFII펀드 등 집합투자기구

조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정사업장의 개념을 준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행 중국의 기업소득세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외국기업이 중국 국경 내에 설치한 기구 또는 장소를 실제관리기구(즉, 고정사업장)로 판정하고 기업소득세법상 주민납세의무자로 간주하여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企所法§3②, 企所條例§3③).

- ① 당해 기구 또는 장소 등이 어떠한 기업에 대하여 실질적인 관리와 통제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 ② 당해 기구 또는 장소 등이 어떠한 기업에 대하여 전면적인 관리와 통제기능을 수행하는 경우
- ③ 당해 기구 또는 장소 등이 어떠한 기업의 생산경영활동·임직원현황·기장상황·자산현황 등에 불문하고 동 기업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관리 또는 통제기능을 수행하는 경우

19) 그러나, 비주민납세의무자라 할지라도 그 비주민납세의무자가 중국 국경 내에 기구 또는 장소를 설치한 경우로 당해 비주민납세의무자가 취득한 중국 내외의 원천소득이 그 기구 또는 장소와 실질적인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중국에서 기업소득세를 납부해야 된다. 이와 반대의 경우 즉 비주민납세의무자가 취득한 원천소득이 당해 기구 또는 장소와 실질적인 관계가 없는 때에는 중국 국경 내의 원천소득에 대하여만 10%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기업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으로 납세의무는 종결된다(企所法 §3③).

20) 그러나, QFII(즉, 집합투자기관)가 중국의 관련 정부기관인 CSRC로부터 허가받은 “위안화 적격 외국인 투자기관”을 의미한다(合格境外机构投资者境内証券投資試點辦法 §2)는 점을 고려하면, QFII(집합투자기관)는 “중국 국경내에 기구 또는 장소를 설치하지 아니하였으나 중국 국경 내에서 원천소득을 취득하는 외국기업과 기타 경제실체”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중국 기업소득세법상 비주민납세의무자로 간주되는 것으로 이해되는바(企所法 §2③, 企所條例 §5), QFII(집합투자기관)를 기업소득세법상 비주민납세의무자로 간주하여 중국 국내의 원천소득에 대하여 기업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를 부여한 규정(國稅函[2009]47號)은 이러한 해석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현행 중국의 기업소득세법에서는 “비거주자기업이 중국 국경 내에 기구 또는 장소를 설치하지 아니하였거나 중국 국경 내에 기구 또는 장소를 설치하였더라도 그 비거주자기업이 중국 국경 내에서 취득한 원천소득이 당해 기구 또는 장소와 실질적인 관계가 없는 경우”에 20%의 우대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企所法 §4 ②), 이 경우 “외국자본과 기술투자를 장려하기 위하여 10%로 세율을 감면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企所條例 §91①), 동 규정과 상기 규정(國稅函[2009]47號)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중국의 과세당국에서는 QFII(집합투자기관)를 중국 기업소득세법상 비주민납세의무자로 간주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해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된다.

를 기업소득세법상 납세의무자로 간주될 수 있다는 것은 집합투자기구가 집합투자기관과는 별개로서 완전히 독립된 과세실체 즉 ‘기타 소득을 취득하는 경제조직’으로 취급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企所法 §2③, 企所條例 §5).

이처럼 중국의 과세당국에서 QFII펀드 등 국외에서 결성된 집합투자기구를 독립된 과세실체로 간주한다면 중국에서 취득한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는 당연히 당해 집합투자기구에 귀속될 것이고, 이러한 국외에서 결성된 집합투자기구는 중국에서 납세의무를 이행한 후의 소득을 국외에 소재하는 집합투자기관에 이전하게 되므로, 결국 당해 소득을 분배받는 중국 국외에 거주하는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들은 중국과 소재지국에서 이중과세를 당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다만, 전술한 것처럼 현행 중국의 기업소득세법에서는 중국 국내에서 설정된 집합투자기구를 단순히 투자자들이 소득을 취득하기 위한 ‘도관(導管)’으로 간주하고 있으며(財稅[2008]1號 §2), 중국 국내에서 설정된 집합투자기구와 QFII펀드 등 국외에서 설정된 집합투자기구의 세무상 성격이 기본적으로 동일한 신탁투자펀드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론적으로 볼 때 국외에서 설정된 집합투자기구 또한 중국 국내에서 설정된 집합투자기구와 마찬가지로 단순히 소득을 취득하기 위한 ‘도관(導管)’으로 취급될 것이므로 상술한 이중과세문제는 자연히 해소될 것으로 판단된다.²¹⁾

그러나, 만일 QFII 등 국외에서 설정된 집합투자기구를 ‘기타 소득을 취득하는 경제조직’으로 보아 납세의무는 부과하였으나 그 이행을 면제해주는 것으로 해석하는 경우는 다소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는 중국의 과세당국이 당해 집합투자기구를 중국의 기업소득세법상 ‘별개의 납세의무가 부과되는 독립된 경제실체’로 인정한다는 것으로 해석되며,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경우에는 당해 집합투자기구의 설정국에서 세무상 어떻게 취급하는지에 따라 과세권의 소재국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다.²²⁾

21) 다만, 국외에서 설정된 집합투자기구가 중국 국경 내에 기구 또는 장소를 설치하였고 중국 국경 내에서 당해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취득한 소득이 그 기구 또는 장소와 관련이 있는 경우, 그 기구 또는 장소를 실제관리기구로 간주하여 동 집합투자기구의 중국 내 기구 또는 장소와 관련이 있는 중국 국경 내외의 모든 소득에 대하여 25%의 세율로 과세될 수 있다(企所法 §4①, 企所條例 §8).

22) 즉, 집합투자기구를 설정한 국가의 세법에서도 당해 집합투자기구를 과세실체로 인정한다면 그 집합투자기구가 취득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국에서 모두 과세할 수 있게되므로 집합투자기관으로의 소득이전 단계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이중과세문제 이외에도 관계국간 국제적 이중과세문제도 발생하게 될 것이며 이러한 문제는 결국 양국간 조세조약에 따라 해결해야 한다. 그러나, 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조세조약을 적용하기 위하여는 국제적 이중과세의 대상인 집합투자기구가 양국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조세조약의 적용대상이 되는 “인”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및 그 요건인 “수익적소유자”로 판정되는지 등에 관하여 종합적인 분석과 판단이 필요하다. 이에 관하여는 IV장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하기로 한다. 한편, 최근 중국에서는 국외에서 설정된 집합투자기구가 중국 국경 내에서 주식양도차익을 취득하는 경우에 대하여 과세면제하도록 규정하였는바(財稅[2014]79號, 國稅函[2009]47號), 이는 과거 국외에서 설정된 집합투자기구가 중국 국내에서 취득한 주식양도차익 관련 규정의 불비로 발생하던 불확실성을 제거하였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조치인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동

IV.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조세조약의 취급

1. 집합투자기구가 조세조약상 ‘인’의 범위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검토

OECD모델조약을 비롯한 각국의 조세조약에서는 조세조약의 적용대상이 되는 “인”에 대하여 열거하고 있다. 이는 조세조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실체에 대하여는 조세조약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OECD모델조세조약 §1). 구체적으로 한중조세조약에서는 조약의 적용대상이 되는 ‘인’의 범위를 ‘개인과 회사 및 기타 인의 단체’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중 회사에 대하여는 ‘법인격이 있는 단체 또는 조세목적상 법인격 있는 단체로 취급되는 실체’라고 규정하고 있다(한중조세조약 §3①). 그런데, 주지하다시피 집합투자기구는 법인격이 없는 자금의 집합체에 불과하므로 집합투자기구가 한중조세조약의 적용대상인 ‘인’의 범위에 포함되기 위하여는 이러한 자금의 집합체인 집합투자기구도 ‘조세목적상 법인격 있는 단체로 취급되는 실체’ 또는 ‘기타 인의 단체’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먼저 현행 중국의 기업소득세법의 관련 규정을 검토한다. 현행 기업소득세법에서는 ‘기업과 기타 소득을 취득하는 경제조직’을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으며(企所法 §1①, 企所條例 §3①), 우리나라의 법인세법과는 달리 법인으로서 등기되었거나 실체를 갖추었는지의 여부에 불구하고 ‘기업’과 ‘기타 소득을 취득하는 경제조직’이라는 경제적 실질의 관점에서 기업소득세의 납세의무자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중국의 기업소득세법 규정에 근거하면 집합투자기구는 기업은 아니지만 ‘기타 소득을 취득하는 경제조직’에는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므로 기업소득세법상 납세의무자의 범위에 포함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²³⁾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법인세법에서는 상법 또는 민법상의 ‘법인’ 개념에 근거하여 원칙적으로 법인격을 부여받은 단체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인격이 없는 집합투자기구는 단순한 자금의 집합체에 불과하므로 법인세법상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규정은 단지 주식양도차익에 관한 규정일 뿐 채권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여전히 규정이 미비되어 있을 뿐 아니라, 2014년 11월 17일 이전에 발생한 주식양도차익에 대하여는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급과세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다만, 주식 또는 채권 등의 양도로 취득하는 자본이득에 대하여 과세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OECD모델조세조약과 각국간 조세조약에서는 배당소득 및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소득의 원천지국에서 과세하되(OECD모델조약 §10①-②, 한중조세조약 §13①-② 등), 주식 또는 채권 등의 양도를 통해 취득하는 자본이득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당해 소득을 취득하는 자의 거주지국에서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OECD모델조약 §13④, 한중조세조약 §13⑤ 등), 집합투자기구가 취득하는 자본이득의 경우 당해 집합투자기구를 설정한 집합투자기관의 소재지국에 과세권이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 23) 이러한 해석은 전술한 중국의 관련 기업소득세법 규정에서 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비과세한다” 또는 “납세의무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과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명확히 지지된다.

은 명확하다. 또한, 우리나라의 국세기본법에서는 어떠한 실체가 법인으로 등기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대하여 세법상 법인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집합투자기구는 관련 요건을 만족시키지 아니하므로 국세기본법의 규정으로 보아도 집합투자기구는 조세조약의 적용대상이 되는 ‘인’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된다.²⁴⁾

요컨대, 중국의 기업소득세법에서는 집합투자기구가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다는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해석상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우리나라의 법인세법에서는 집합투자기구가 법인세의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격있는 단체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조세조약의 적용대상인 ‘인’의 범위 중 ‘기타 인의 단체’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2014년 개정 OECD모델조약 주석에서는 신탁에 기초한 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신탁의 설립국 세법에 따라 신탁을 납세의무자로 보는 경우 신탁 또한 조약목적상의 인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으므로(OECD모델조약 주석 3-2), 동 규정을 보조적인 판단의 준거로 삼는다면 집합투자기구를 우리나라의 납세의무자로 간주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러한 논지에 따르면 집합투자기구는 한중조세조약의 적용대상인 ‘인’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²⁵⁾

2. 집합투자기구가 양국의 세법상 ‘거주자’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검토

OECD모델조약에서는 거주자에 대하여 ‘그 국가의 법에 의해 주소나 관리장소 또는 이와 유사한 다른 기준에 의하여 그 국가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인을 의미하나, 동 체약국 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한 소득 또는 그 국가소재 자본에 대하여만 납세의무가 있는 인은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중조세조약에서는 거주자에 대하여 ‘일방체약국의 거주자란 그 체약

24)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서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관하여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세법 제5조 제1항에서는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가 그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례에 따르면 집합투자기구는 우리나라 세법상 납세의무자인 ‘인’에 포함되지 아니하게 된다. 다만, 법인세법 제57조의2 제3항에서는 ‘투자신탁, 투자합자조합 및 투자익명조합의 경우에는 그 투자신탁 등을 내국법인으로 보아’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동 규정은 전술한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과 부합되지 아니하여 집합투자기구를 ‘조세목적상의 인’으로 간주하는 것인지 법인세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는 것인지 해석이 불분명해진다.

25) 한중조세조약에서는 “협정에 정의되어 있지 아니한 용어는 문맥에 따라 달리 해석하지 않는한 각 체약국의 법에 따른 의미를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다(한중조세조약 §3②). 집합투자기구라는 용어는 한중조세조약에 정의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나라 법률상 “신탁에 기초한 집합투자기구”라는 의미로 해석가능하므로 OECD모델조약(주석 3-2)의 규정에 근거하여 한중조세조약의 적용대상인 “인”의 범위에 포함시킬 수도 있다는 의미이다.

국의 법에 따라 주소·거소·본점이나 실질관리장소의 소재지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다른 기준에 의해 그 체약국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인'으로 정의하고 있다(OECD모델조약 §4①, 한중조세조약 §4①). 따라서, 어떠한 집합투자기구가 OECD모델조약과 한중조세조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어느 일방 체약국의 세법상 거주자가 되기 위하여는 그 집합투자기구가 동 체약국에서 납세의무를 부담하고 본점이나 실질관리장소 등이 설립되어 실질적인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그 사업과 당해 본점이나 실질관리장소간에 상호연관성이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중국의 기업소득세법에서는 중국 국경 내에 소재하는 기업과 기타 소득을 취득하는 조직을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조세조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주자(중국 기업소득세법상 주민납세의무자를 의미)'에 대하여는 '중국의 법률에 따라 중국 국경 내에 설립되었거나 외국 법률에 의거하여 중국 국경 외에 설립되었으나 실제관리기구가 중국 국경 내에 소재하는 기업'으로 정의하고 있다(企所法 §2②, 企所條例 §3①). 따라서, 중국의 기업거주자에 관한 규정은 기본적으로 OECD모델조약 및 한중조세조약의 규정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중국 국내에 투자하는 국외에서 설정된 집합투자기구는 중국 국경 내에 설립되지도 아니하였고 중국 국경 내에 실제관리기구가 존재하지도 아니하므로 중국의 거주자기업으로 볼 수 없다.

우리나라의 경우 집합투자기구 관련 과세이론인 신탁도관이론과 현행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르면 집합투자기구는 법인세법상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된다.²⁶⁾ 즉, 집합투자기구의 특성을 고려하면 QFII펀드 등 집합투자기구는 중국에 투자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정된 자금의 집합체이므로 법인세법상 집합투자기구는 투자자가 소득을 수취하기 위한 도관(導管)에 불과할 뿐 내국법인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법인세법에서는 또한 집합투자기관으로 하여금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QFII펀드 등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고 집합투자기관만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어 관련 규정이 상호 모순된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법인세법 제57조의2).²⁷⁾

요컨대, 집합투자기구는 중국 기업소득세법에서든 우리나라 법인세법에서든 모두 특정 지역에 시설을 갖추고 실질적으로 경영활동을 수행함과 동시에 당해 경영활동과 관련있는 납세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OECD모델조약과 한중조세조약의 거주자요건을 충족하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26) 법인세법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에 대하여 법인세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집합투자기구는 법인세법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이는 우리나라의 법인세법이 신탁도관이론을 수용하고 있다는 점을 반증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27) 집합투자기구나 집합투자기관 모두 법인세법상 납세의무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데도 불구하고 집합투자기관은 집합투자기구 또는 그 투자자가 외국에서 납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 대하여 외국납부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논리에 부합되지 아니한다.

3. 집합투자기구가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검토

2014년 개정된 OECD모델조약 주석에서는 ‘외국의 공모펀드의 경우 펀드자체가 수익적 소유자로 취급될 수 있으나, 그 이외의 외국펀드와 파트너쉽 및 기타 외국단체의 경우에는 배당의 수취인인 이들 외국단체가 받는 지급금을 다른 자에게 전달해 주어야 하는 계약상 또는 법적 의무에 의해 제약을 받지 아니하고 외국단체가 배당을 사용하거나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 수취인인 외국단체는 당해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라 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익적 소유자가 될 수 없다’고 새로이 규정하여 수익적 소유자로 판정될 수 있는 특정 외국단체의 조건에 대하여 명확히 하였다(OECD모델조약 주석 §12-4). 따라서, 집합투자기구가 공모펀드의 형태로 설정된 경우에는 조세조약상의 수익적 소유자로 판정될 수 있을 것이지만, 만일 공모펀드가 아니라면 특정 지급금 등을 지급받은 후 법적 의무 또는 계약상의 제약 없이 자유로이 사용하거나 향유할 수 있어야만 수익적 소유자로 판정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한중조세조약에서는 수익적 소유자와 관련하여 단지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의 원천지국이 중국이고 당해 소득의 수취인의 거주지국이 한국인 경우 또는 그 반대인 경우에는 소득의 원천지국과 거주지국에서 모두 과세할 수 있으나, 당해 소득의 수취인이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는 그 소득의 원천지국에서 10%이하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수익적 소유자의 요건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규정이 제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한중조세조약 §10①-②, §11①-②). 따라서, 현행 한중조세조약의 규정으로는 집합투자기구가 조세조약상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OECD모델조약 주석의 관련 규정을 참고하여 집합투자기구가 공모펀드인 경우에는 수익적 소유자가 될 수도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수밖에 없다.

한편, 중국의 기업소득세법 등에서는 수익적 소유자에 대하여 소득 또는 소득을 발생시킬 권리 또는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과 지배권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일반적으로 실질적인 경영활동에 종사하는 개인이나 회사 또는 기타 모든 단체로 규정하고 있다(國稅函[2009]601號, 公告[2012年]30號). 그런데, QFII펀드 등 중국에 투자하고 있는 집합투자기구는 당해 QFII펀드의 투자자로부터 조달한 자금의 집합체일 뿐 실제 경영활동은 자산운용사 등 중국의 증권감독위원회로부터 적격외국인투자기구자격을 취득한 우리나라의 금융기관이므로 QFII펀드 등 집합투자기구 자체는 중국 기업소득세법상 수익적 소유자의 범위에 포함될 수 없는 것이다.²⁸⁾

28) 중국 기업소득세법에서는 수익적소유자를 판정하는 경우 각각 다른 성격의 소득에 대하여 다음에 열거하는 요소에 대한 분석을 거쳐 판정해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國稅函[2009]601號 §2②).

① 납세의무자가 규정된 기간(예를 들어, 소득을 취득한 12개월)내에 소득의 전부 또는 대부분(예를 들어, 60% 이상)을 제3국(지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거나 배당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경우
② 납세의무자가 소득에 따른 재산이나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이외에는 기타의 경영활동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거의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에 반하여 우리나라에서는 단지 1996년의 유권해석에서 수익적 소유자는 ‘어떤 소득의 실질적인 수취인을 가리키며 개별 조세조약에 있어서 체약국의 거주자인 특정소득의 수취인이 법적 또는 형식적으로 당해 소득의 수익자일 뿐만 아니라 경제적 또는 실질적으로 그 수익자이어야 한다’고 해석하면서 ‘어떠한 소득의 실질적인 수취인’이라는 개념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이다(재국조 46017, 1996.2.3). 다만, 최근 몇몇 관련 판례를 통하여 수익적 소유자의 개념을 정립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 또한 수익적 소유자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실질과세원칙과 도관회사(導管會社)의 존재여부 및 조세회피의 결과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을 뿐 현행 세법에서는 수익적 소유자에 대하여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대법원. 2012.1.27. 선고. 2010두5950판결, 대법원. 2012.4.26, 선고. 2010두11948 판결).

정리하면 현행 OECD모델조약에 따르면 집합투자기구가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조세조약의 적용대상이 되는 수익적 소유자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QFII펀드 등 중국에 투자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집합투자기구 역시 수익적 소유자가 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중국의 경우 관련 세법 규정에서 수익적 소유자에 관한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세법에서는 아직 수익적 소유자에 대한 개념이 정의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입법적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여겨진다.²⁹⁾

-
- ③ 납세의무자인 기업의 자산 또는 규모 및 인원편제와 소득금액이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 ④ 납세의무자가 형식상 보유하고 있는 소득이나 소득에 따른 재산 또는 권리에 대해 통제권이나 처분권이 없거나 거의 없으며, 그에 상응하는 리스크도 부담하지 아니하거나 적게 부담하는 경우
 - ⑤ 타방체약국 국가(지역)에서 관련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면세하는 경우 또는 소득세를 징수하지만 그 실제 적용세율이 매우 낮은 경우
 - ⑥ 이자의 발생 및 지급 관련 대출계약 이외에 채권자와 제3자가 금액·이자율·채결기간 등에서 그와 유사한 기타의 대출 또는 예금계약이 존재하는 경우
 - ⑦ 특허권사용료의 발생 또는 지급 관련 판권·특허·기술 등 사용권양도계약 이외에, 신청인과 제3자가 관련 판권·특허·기술 등의 사용권이나 소유권 등에 대한 양도계약이 존재하는 경우
- 29) 다만, 학계에서는 조세회피지역에 소재하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변인으로서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 또는 제한세율 적용의 사전승인 대상이 되는 소득수취자 중의 하나로서 실질귀속자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207조 4의 제2항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5의 제2항 1호에서 들고 있는데, 이 시행령 규정들은 실질 귀속자를 “소득수취자가 당해 국내원천소득과 관련하여 법적 또는 경제적 위험을 부담하고 동 소득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등 동 소득에 대한 소유권을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수익적 소유자 개념으로 새겨야 한다는 주장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김완석 2007 ; 오운 2010). 다만, 한중조세조약과 관련하여서는 수익적 소유자 정의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을 두지 않기 때문에 국제조세가 추구하는 “공정성 촉진”의 목적과 조세조약의 목적에 위반되지 않게 한중조세조약(의정서, 양해각서 등 포함)에 통일된 정의와 판정기준을 두도록 개정하거나 조세조약 이외의 다른 협의를 통하여 통일된 정의와 판정기준을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안경봉·장월하 2011)과 조세조약의 목적 및 OECD모델조약과 한중 양국의 수익적 소유자에 대한 판례 및 관련 규정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한중조세조약에 수익적 소유자에 관한 규정을 명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유호림 2011b).

V. 결 론

본문에서는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일반적 과세방법과 과세제도에 관한 이론적 검토에 기초하여 중국의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과세규정과 OECD모델조약 및 한중조세조약의 관련 규정을 중심으로 중국의 집합투자기구 관련 과세제도의 특징과 우리나라의 관련 세법규정 등을 분석하고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한중조세조약의 적용가능성 및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우선 중국의 세법에서는 기본적으로 ‘도관이론(導管理論)’에 기초하여 중국 국내에서 결성된 집합투자기구가 아닌 당해 집합투자기구를 통해 실질적으로 수익을 취득하는 자(즉, 세무상 실체)에 대하여만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관점에 기초하여 중국 국내에서 결성된 집합투자기구 관련 중국 세법규정에 대한 검토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에서는 중국 국내에서 결성된 집합투자기관과 집합투자기구에 귀속되는 소득 및 기업투자자가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분여받는 소득에 대하여는 모두 기업소득세의 징수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주식양도소득을 제외한 배당소득과 이자소득 등의 자본이득이 개인에게 귀속되는 경우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국의 세법에서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신탁도관이론과 대리방법에 근거하여 과세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을 채용하고 있는 데서 기인한 결과로 판단된다.

중국이 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이와같은 과세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주된 이유는 궁극적으로 집합투자기구의 수익금이 당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에게 분배되는 단계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경제적 이중과세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인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중국에서 결성된 집합투자기구와의 과세형평성과 경제적·국제적 이중과세문제를 고려하면 우리나라에서 결성되어 중국에서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QFII펀드 등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문제에 대하여도 기본적으로 자국의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방법과 동일하게 접근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현행 중국의 기업소득세법 규정에 따르면 QFII펀드 등 우리나라의 집합투자기구가 중국에서 투자하여 취득한 소득에 대한 중국내 납세의무자의 판정과 관련하여서는 집합투자기구인 QFII펀드 자체가 중국 기업소득세법상 납세의무자가 될 수도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경우 필연적으로 한중 양국간 국제적 이중과세문제가 야기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현행 양국의 세법규정과 한중조세조약의 규정을 고려하면 QFII펀드 등 우리나라의 집합투자기구가 양국의 세법상 ‘거주자’나 ‘수익적 소유자’ 및 조세조약의 적용대상인 ‘인’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현행 한중조세조약의 규정으로는 양국간 이중과세문제를 해소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2014년 개정된 OECD모델조약 주석에서는 ‘외국의 공모펀드의 경우 펀드자체가 수익적 소유자로 취급될 수 있다’고 새로이 규정하였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설정된 집합투자기구가 한중조세조약상 수익적 소유자로 판정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한중 양국의 세법규정이 상이할 뿐 아니라 한중조세조약에 명확한 규정이 존재

하지 않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는 한중조세조약의 개정 또는 의정서의 체결 등을 통하여 집합투자기구와 이와 관련있는 한중조세조약상의 ‘인’과 ‘거주자’ 및 ‘수익적 소유자’에 관한 규정 등을 명확히 해야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밖에, 현행 우리나라의 집합투자기구에 관련 세법규정이 OECD모델조약 등 국제규범에 부합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집합투자기구를 이용하여 해외투자하는 과정에서 세무상 불이익을 당하거나 우리나라의 세수입이 유실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즉, 우리나라의 집합투자기구가 미국 또는 중국 등 집합투자기구를 조세목적상의 ‘인’으로 간주하는 국가에서 투자활동을 수행하고 소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대상국과 우리나라에서 모두 과세권을 행사하게 되므로 양국간 조세조약을 적용하여 이중과세를 제거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세법에서는 집합투자기구를 조세목적상의 ‘인’의 범위에서 배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집합투자기구가 조세조약의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집합투자기구의 과세에 관한 국제적인 동향을 고려하여 우리나라의 집합투자기구 또한 조세조약의 적용대상이 되는 ‘인’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도록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관한 규정과 법인세법 제5조 제1항 및 법인세법 제57조의2 제3항의 신탁에 관한 규정 및 외국납부세액공제에 관한 규정 등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거나 신설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첫째,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공모형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규정을 추가해야 한다. 동 규정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집합투자기구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포함되지 아니하나, 국제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가 피투자국에서 취득하는 소득에 대하여 그 원천지국에서 과세되는 경우에는 조세조약을 적용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국내에서 결성된 공모형 집합투자기구에 한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간주하는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국세기본법 제14조 제4항 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에 ‘수익적 소유자’에 관한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 현재 OECD모델조약 및 주요국의 세법에서는 공모투자펀드 등 집합투자기구가 사법체계에서 실제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익적 소유자’로 보아 조세조약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세법에서는 ‘수익적 소유자’에 관한 명문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조세조약을 적용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몇몇 판례에서 ‘수익적 소유자’의 개념을 제시하고 있으나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하여는 국세기본법 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수익적 소유자’에 관한 규정을 신설해야 할 것이다.

셋째, 법인세법 제5조 제1항 및 제57조의2의 규정이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이 상호간 모순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관련 규정과의 정합성을 제고되도록 개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즉, 법인세법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에 대하여 법인세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집합투자기구는 법인세법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는바, 국내에서 결성된 공모형 집합투자기구에 한하여 법인세법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고 이를 위하여 집합투자기구의 수익과 비용 및 손실에 관한 내용을 특례규정으로 입법할 필요가 있다. 또한, 법인세법 제57조의2 제3항의 규정에 따르면 집합투자기구는 ‘조세목적상의 인’으로 취급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으나,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제5조 제1항과 해석상 모순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술한 것처럼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제5조 제1항을 또는 법인세법 제57조의2 제3항의 규정이 상호간 정합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개정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국제조세협회, 『역외탈세』, 제1판, 삼일인포마인, 2014.
- 김병일. 2005. “자산유동화전문기구에 관한 과세문제”, 경희법학 제40권 제2호.
- 김완석. 2007. “실질과세의 원칙과 수익적소유자와의 관계”, 월간 공인회계사 제167호.
- 김용민. 2010. “집합투자기구 세제에 관한 연구”, 조세연구 제10권 제3집.
- 김재진 · 홍용식. 1998. 『신탁과세제도의 합리화 방안』, 제1판, 한국조세연구원.
- 김종해. 2010. “신탁과세제도에 관한 연구”, 강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문성훈. 2008. “국제투자펀드의 조세조약상 지위”, 조세학술논집 제24집 제1호.
- 손영철 · 김선중. 2009.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조세조약 적용방안에 관한 연구”, 조세법연구 제15권 제3호.
- 송성권. 2007. “수익적소유자(Beneficial Owner)과세에 관한 국제적 기준”, 계간세무사 제25권 제2호.
- 안경봉 · 장월하. 2011. “한 · 중 조세조약상 수익적 소유자”, 법률논문 제27권 제2호.
- 오 윤. 2010. “Beneficial Ownership 개념과 실질과세원칙과의 관계”, 조세학술논집 제16집 제1권.
- 유호림. 2011a. 『最新中國稅法』, 초판. 세학사.
- _____. 2011b. “한중조세조약에 관한 연구”. 조세연구 제11집 제3권.
- _____. 2012. “중국의 자산유동화세제에 관한 연구”, 조세학술논집 제28집 제2호.
- 이경근. 2011. “집합투자기구와 역외소득탈루”, 조세학술논집 제27집 제1호.
- _____. 2004. “투자펀드를 이용한 국제투자시 발생하는 조세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조세학술논집 제20집.
- 이미현. 2003. “신탁방식에 의한 자산유동화와 관련된 조세문제”. 조세법연구 제9권 제1호.
- 한상국. 2007. “중국의 새로운 기업소득세법에 대한 법학적 고찰”. 세무학연구 제24권 제3호.
- 대법원. 2012.1.27. 선고. 2010두5950 판결.
- 대법원. 2012.4.26. 선고. 2010두11948 판결.
- 中國信託法
- 中國證券法
- 中國證券投資基金法
- 合格境外机构投资者境内証券投資試点辦法
- 財稅[2014]79號
- 國家稅務總局公告[2012年]30號
- 財稅[2012]85號
- 國稅函[2009]47號
- 國稅函[2009]601號,

財稅[2008]1號

財稅[2004]78號

財稅[2002]128號

財稅字[1998]61號

[http : //www.fss.or.kr/fss/kr/info/financial/financedic.jsp](http://www.fss.or.kr/fss/kr/info/financial/financedic.jsp)

[http : //baike.baidu.com/link?url=1_WVcAhDxc0Nu6Kk9XshtntQoCXGhyKlmujK3zxy5ysw_oHy8Tct0BCXVoOswdnG2TDvWmpqGLLOcR34jeq1uCgATNqKhbRmw5hiSb_Yh7](http://baike.baidu.com/link?url=1_WVcAhDxc0Nu6Kk9XshtntQoCXGhyKlmujK3zxy5ysw_oHy8Tct0BCXVoOswdnG2TDvWmpqGLLOcR34jeq1uCgATNqKhbRmw5hiSb_Yh7).

A Study on China's Taxation System for Collective Investment Vehicles(CIVs)

Yoo, Ho-Lim*

—〈Abstract〉—

Based on the theoretical review of general taxation methods and taxation systems for CIVs, this study examined China's taxation regulation for its CIVs, the characteristics of China's taxation system for its CIVs in light of the relevant provisions of OECD model treaties and Korea-China taxation treaty, and the provisions of South Korea's relevant taxation law, as well as the applicability of Korea-China taxation treaty to the CIVs, relevant problems and improvement measures. Such examination results are outlined below.

First, China provides that with regard to the income belonging to collective investment institutions and CIVs, formed in China, as well as to the investors' income paid out by CIVs, all corporate income taxes are exempted, and that in case the capital gains such as the dividend payout income and interest income except the income from stock assignment belong to individuals, the income shall be taxed. This is presumably because China's tax law bases its taxation on CIVs on the Conduit Theory for Taxation of Trust Income and on the method of power of attorney.

Second, considering the current tax regulations of both nations and the provisions of Korea-China Tax Treaty, QFII fund and other CIVs of South Korea are not included in the scope of the targets—subject to the application of the Tax Treaty—such as residents, beneficiary owners, and “people” according to the Tax Laws of both nations, so the current provisions of Korea-China Tax Treaty alone would make it difficult to resolve the double taxation problems between the two nations. Thus, Korea-China Tax Treaty should be amended or a protocol should be signed so as to clearly define regulations on CIVs and relevant targets such “people”, “residents”, and “beneficiary owners”, under Korea-China Treaty.

Third, a provision on the public-private partnership-type CIVs should be added to Article 13—Section 2 of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 According to this regulation, South Korea's CIVs do not belong to the organizations seen as corporations. In case the original tax-collection nation impose taxes on the earnings that CIVs—which aims for international investment—acquire in the nation invested, however, the Tax Treaty cannot apply, so there is a need to establish a provision under which the public-private partnership-type CIVs, formed domestically, should be regarded as the organizations seen as corporations.

* Professor, Kangnam University Department of Tax Administration

Fourth, the current OECD model treaty and tax laws of major nations regard public investment funds and other CIVs—if they are authorized under the enforcement system—as beneficiary owners so as to apply the tax treaty to them. However, South Korea’s tax law does not specify a provision on beneficiary owners, thus creating the problem of being unable to apply the tax treaty to such. Some recent judiciary precedents present the concept of beneficiary owners, but to ensure legal stability and predictability, a provision on beneficiary owners should be established in Article 14—Section 4 of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 or in Article 2—2 of the Act on International Tax Adjustment.

Fifth, Article 5—Section 1 of the Corporate Tax Act (the Act) provides that the Act should apply to beneficiaries of trusts, thereby creating the problem of being unable to apply the Act to CIVs, so the Act should be amended to be applied to public—private partnership—type CIVs formed domestically, and accordingly, the special regulation on the revenues, costs and losses of CIVs needs to be legislated. In addition, according to Article 57—Section 3 of the Act, CIVs may be interpreted to be regarded as “people” for the purpose of taxation, but this may contradict the interpretation of Article 13—Section 2 of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 and of Article 5—Section 1 of the Act. Thus, as mentioned above, Article 13—Section 2 of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 Article 5—Section 1 of the Act, and Article 57—2—Section 3 of the Act should be rationally amended to be highly compatible among them.

<Key words> Collective Investment Vehicles, Korea—China Tax Treaty, Beneficial owner, Trust taxation